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이야기로 꾸민 정비사례



-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의무 및 정기검사 도입 06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의 명확화 10

일반정비



① 국민 안전 보호

- ①-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명확화 16
- ①-2. 건설기술인의 신고 법령 명확화 17
- ①-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법령 명확화 18
- ①-4. 항해시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명확화 19
- ①-5.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명확화 20
- ①-6.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의 설비기준 개선 21
- ①-7. 재난정보문자 표본문안 구체화 22
- ①-8.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 명확화 23
- ①-9.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예외 사유 명확화 24
- ③-10.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 명확화 43
- ③-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이 완화 되는 경우의 인력기준 명확화 44

④ 법체계 정비

- ④-1. '대행'과 '위탁' 명확화 48
- ④-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과 협력 대상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간의 관계 명확화 49
- ④-3.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50
- ④-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의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명확화 51
- ④-5. 타협상 기술인력 기준을 준용할 때 준용 대상을 특정하도록 규정 명확화 52
- ④-6. 미인증수산물에 표시할 수 없는 "친환경" 문구 명확화 53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②-1.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부장에 표기 선택 도입 28
- ②-2. 「이동복지법」상 이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 정비 29
- ②-3.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규정 신설 30
- ②-4.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확대 31

③ 국민 불편 해소

- ③-1.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34
- ③-2.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5
- ③-3. 요양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시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 정보를 제외하는 등 공표사항 정비 36
- ③-4.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제출기준 개선 37
- ③-5. 납품대금 조정 대상 명확화 38
- ③-6.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명확화 39
- ③-7. 임대차계약 변경사항 신고일 관련 규정 명확화 40
- ③-8.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명확화 41
- ③-9.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규정의 적용 요건 명확화 42
- ⑤-1. 자전거도로의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명확화 56
- ⑤-2.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필요 여부 명확화 57
- ⑤-3. 임시허가에서 제외되는 위·수탁차주의 범위 명확화 58
- ⑤-4. 주택 이축시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59
- ⑤-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명확화 60
- ⑤-6. 「농지법」 위반 농지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말소 대상 여부 명확화 61
- ⑤-7.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사유 명확화 62
- ⑤-8. 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 상실 시 등록취소 등거 명확화 63
- ⑤-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규정 명확화 64
- ⑤-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 대상 명확화 65
- ⑤-1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의 명확화 66



- ⑤-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 명확화 67
- ⑤-13. 전라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68
- ⑤-14.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 명확화 69
- ⑤-15.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명확화 70
- ⑤-16.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등 동의 산정방식 명확화 71
- ⑤-17.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의 의미 명확화 72
- ⑤-18.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명확화 73
- ⑤-19.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범위 명확화 74
- ⑤-20. 「판로지원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75
- ⑤-21.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명확화 76
- ⑤-22.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창문 등'의 범위 명확화 77
- ⑤-2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명확화 78
- ⑤-24. 1차 행정처분 후 등록요건 미달상태 유지 시 2차 행정처분 가능 여부 명확화 79
- ⑤-25. 특별채용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확화 80
- ⑤-26. 공개 청원을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 명확화 81
- ⑤-27.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보증금 면제 대상 명확화 82
- ⑤-28. 매수업무의 대상이 되는 임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 등에 대한 관리기관의 처분방법 등의 명확화 83
- ⑤-29.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갱신요구에 대한 의무 명확화 84
- ⑤-30.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명확화 85
- ⑤-31.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의무 대상 명확화 86
- ⑤-3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명확화 87
- ⑤-33. 거주무자의 거주간주 사유 및 그 발생시점 등의 명확화 88
- ⑤-34. 청년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의 추정 기준 명확화 89
- ⑤-3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제2항의 전매의 범위 명확화 및 형사처벌 타당성 90
- ⑤-36.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명확화 91
- ⑤-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의 명확화 92
- ⑤-38. 이용·미용기구 중 티올 및 도포류 재사용 기준 완화 93
- ⑤-39. 군인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원 근거 도입 94
- ⑤-40. 바다 양식장 위치 및 구역도 표지판 설치 의무화 95
- ⑤-41. 내항여객선이 운항 중인 도서지역에도 도선업 가능한 예외사유 신설 96
- ⑤-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수의계약 범위 명확화 97
- ⑤-4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제1항의 적용대상 98
- ⑤-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아목라)의 규정 중 유효기간이 도과한 규정에 대한 정비 99
- ⑤-45.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 시 적용되는 건축물의 최대면적 명확화 100
- ⑤-46.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의무 제외범위 명확화 101
- ⑤-47. 한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 수정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명확화 102

기획정비



- 3-1. 소상공인의 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106
- 3-2.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111
- 3-3.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개선 112
- 3-4. 미성년자 연령제한 결격사유 완화 113
- 3-5.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114

PART

1

이야기로 꾸민 정비사례

-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의무 및 정기검사 도입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의 명확화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STORY 1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의무 및 정기검사 도입

서울 강남
라 1 2 3 4



5년 전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연우씨.

오늘은 평소보다 빠른 퇴근에 하니뿐인 딸, 진영이의 마음을 나왔다.

연우씨는 진영이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자라중에 고마울 뿐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빠!”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 예쁜 딸이다.

“딸!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저녁 메뉴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며 집으로 오는 길이 연우씨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아이의 수다에 장단을 맞추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차로 횡단보도 앞, 연우씨와 진영이는 녹색불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가 진영이와 닿을 듯 가깝게 속도를 내며 질주했다.

“빠양~!! 빵!”

“까악!” 진영이의 비명과 함께 연우씨의 눈도 함께 커진다.

“진영아 괜찮아?” 넘어진 딸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우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응, 괜찮은 거 같아.” 깜짝 놀라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영씨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문제의 오토바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래도 카메라에는 찍혔겠지?’

하는 생각으로 근처에 있을법한 과속방지 카메라를 찾아보았다. 다행히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라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적어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겠군’

그 카메라에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가 찍혔으리라 생각했던 연우 씨는 잠시 후,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단속용 카메라는 차량의 앞부분을 찍도록 고정되어 있었으며, 오토바이는 앞부분 번호판이 없다는 사실이 연달아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우씨는 우선 아이를 안심시키고 저녁식사 후, 오토바이 카메라 단속에 관하여 검색해 보았다. 한참 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의 후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다는 기사 또한 읽을 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연우씨의 마음 한구석엔 '후면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의문이 남아 있다.

다음날 오전, 연우 씨는 어제 사고를 신고하고, 새로운 단속방법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구청에 전화했다.

“선생님과 따님 모두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담당자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연우 씨는 궁금했던 점을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주는 담당자.

“네,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단속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법령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나 신호위반이 너무 많아져서,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해 앞부분에도 번호판을 붙이게 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지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요?”

“2024년 이내에 정확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고, 2025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의 밝은 응대와 정부의 방침에 한결 마음이 편해진 연우 씨.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내년부터 난폭운전은 좀 줄겠네.’

일찍 퇴근해서 딸아이를 마중 나가기로 계획하는 연우 씨.

오늘은 다들 조심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개선됩니다

현재 이륜차의 경우 전면번호판이 없어서 신호·속도 위반 시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륜차에 전면번호판 부착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개조 등을 막을 예정입니다. 본 법령은 2024년 중 관련 내용이 결정되어 2025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STORY 2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의 명확화



지난달, 취업에 성공하여 인사팀에 배치된 선영씨, 무사히 수습 기간을 마치고 처음 받은 업무는 임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과 경과보고다. 첫 업무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선영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근거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아 수신인을 선정하고 교육참여 메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선영씨를 부르는 소리.

“선영 프로님, 잠깐 볼 수 있어요?”

너그럽지만 일에는 진심인 팀장님의 목소리다.

나름 첫 일을 잘 해냈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고 있던 선영씨가 다시금 긴장하며, 팀장님 자리로 달려갔다.

“네, 팀장님?”

“여기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자에 대표이사님이 빠졌는데요?”

“아? 네. 근거법에 따르면 교육대상자가 사업주 및 근로자라서요. 대표이사님은 상급자에 해당하니 교육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살짝 웃으며 선영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그럼 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법령을 찾아보는 선영씨

제12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주체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어? 책임님, 이건 제13조제2항과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라는 선영씨의 답변에 당황스러움이 묻어있다.

“네, 그 대상자라는 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메일 수신인을 확인해 봤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덕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봤는데, 2024년부터는 헷갈리지 않도록 교육대상에 상급자도 명확히 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수 배웠어요.”



얼른 자리로 돌아가 대표이사님께 보낼 메일을 작성하는 선영씨. 실수를 통해 한 가지를 더 배웠다는 생각이지만 붉어진 얼굴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교육대상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선정한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는 선영씨, 이제 같은 실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개선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주체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라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급자'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성희롱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예방 교육도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에 대표이사나 상급자를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내에 상급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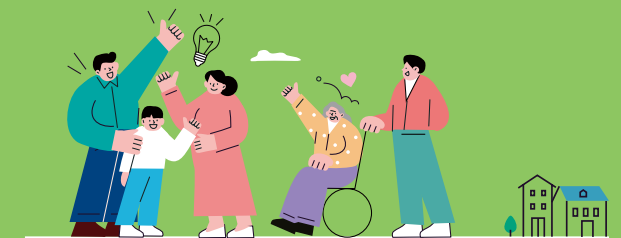
PART

2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체계 정비
- ⑤ 법령의 명확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명확화



법령명: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관 부처: 소방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불분명



개선내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는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것”이 건물의 모든 층을 의미하는지 혹은 특정 층 이상이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그 내용과 같은 목 7)과의 적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한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나 같은 목 7)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정비추진완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1. 29. 전부개정) 기존 별표 5의 내용은 별표 4로 옮겨갔고, 별표 4 제1호라목10)다)에서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



건설기술인의 신고 법령 명확화



법령명: 건설기술 진흥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



개선내용

건설기술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법령 명확화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소관 부처: 환경부



법령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제



개선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개정요 발생 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도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상선에 승무한 경력인지 어선에 승무한 경력인지와 무관하게 승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개선내용

4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중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집회장에 설치되는 봉안당의 경우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목 18)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교통정비법령의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의 설비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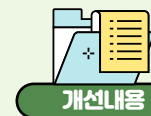
법령명: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승객피난용·비상용승강기의 설비기준 중 승강장·승강로에 서로 기능이 상반되는 배연설비(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 제연설비(유독가스를 차단)를 중복 설치하여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승강기 용도에 맞게 승강장·승강로에 배연설비 혹은 제연설비 중 한 가지 종류만을 설치하도록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을 개선할 필요



2024년(예정)



재난경보문자 표준문안 구체화



법령명: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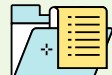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경보사유·대피장소·방법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표준문안을 개선할 필요



개선내용

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에 경보사유 등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 명확화



법령명: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개선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예외 사유 명확화



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보는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제외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내용

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PART

2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체계 정비
- ⑤ 법령의 명확화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부장애 표기 선택 도입



법령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각종 복지혜택·세제혜택·취업 등의 증명서류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주장애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목적이 달성가능함에도 부장애까지 일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선내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이 부장애에 대해서는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 정비



법령명: 아동복지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등을 선고받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교육 시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임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개선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제2122711호, '23. 6. 16.)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규정 신설



법령명: 교통약자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주차 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없어서 공항·항만 등에서 단속이 어려우므로 「장애인등편의법」을 참고하여 이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



여객시설(공항·철도역사 등) 및 도로(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차방해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신설 필요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김예지 의원 제2122424호, '23. 5.31., 박영순 의원 제212698호, '23. 6.16., 대표발의 법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확대



법령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주택에 60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노인이 부양하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규정되어 있는데, 19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라도 장애 등 사유로 입소자격자인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경우 문제됨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의 동반입소자격자의 기준 연령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인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자녀·손자녀는 기준 연령 이상이라도 동반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 추진 완료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PART

2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체계 정비
- ⑤ 법령의 명확화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법령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교통체증과 보행자 위험을 발생시키나 현행 법령에는 도로 점용 허가 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어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도 인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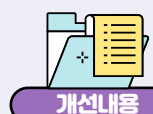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포함하거나, 면적에 상관없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비 추진 예정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기준에 따르면, 수험자의 가족의 사망·본인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응시수수료의 50%만 환불하고 있음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의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에는 수수료의 과오납 및 접수취소 등의 사유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100% 환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요양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시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 정보를 제외하는 등 공표사항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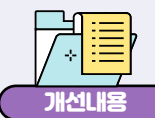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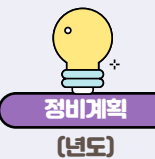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 및 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표 제도의 목적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공표하도록 제한을 둘 필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사실의 공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제도에서도 성별은 공표 사항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여 대표자의 성별을 공표사항에서 삭제하고, 공표 사항의 위임 범위에 맞게 '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제출기준 개선



법령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교육부



검정고시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능 응시자 사진이나 각종 신분증 사진 촬영기한인 6개월에 비해서 짧아 응시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



검정고시 응시원서만 별도로 짧게 기한을 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능 및 신분증 사진과 같이 촬영기한을 6개월로 확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납품대금 조정 대상 명확화



법령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같은 법이 적용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도 적용되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개선내용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명확화



법령명: 항만법 시행령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모두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 보게 되면, 항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을 적용받게 되어 민간 투자유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함



개선내용

항만법령에 따라 규율하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려는 규제 범위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실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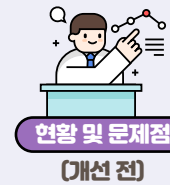
임대차계약 변경사항 신고일 관련 규정 명확화



법령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예정일(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을 의미함)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계약당사자를 달리하는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 계약의 “변경”이라 표현하지 않고 계약의 “체결”이라 표현하는 계약 관련 용어의 일반적 사용례를 고려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명확화



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음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24년(예정)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명확화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명확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관 부처: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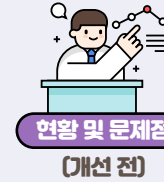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보험료의 면제 규정과 통합하여 보험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종전보다 5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될 때 재협의를 변경협의를 면제되는데, 당초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불구하고 그 면적을 종전보다 5퍼센트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계획의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각각의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의 인력기준 명확화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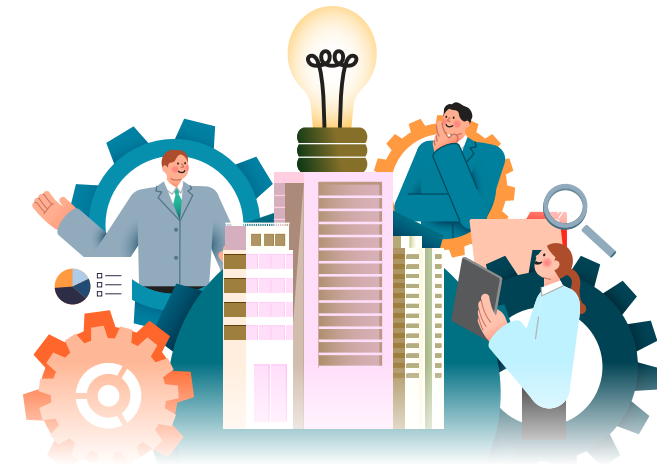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인력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가목2)의 인력확보기준(변호사 등은 1명 이상)을 확보해야하는지가 문제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같은 목 2)의 인력(변호사 등은 1명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PART

2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체계 정비
- ⑤ 법령의 명확화





‘대행’과 ‘위탁’ 명확화



법령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바, ‘대행’업무가 ‘위탁’업무로 운용·해석될 우려가 있음



개선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의 특성,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4항제2호의 ‘위탁’을 ‘대행’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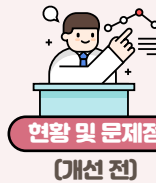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과 협력 대상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간의 관계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개선내용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 협력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법령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소관 부처: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규모 및 대상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제됨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명확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관 부처: 환경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함께 의제된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계획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



2024년(예정)



타법상 기술인력 기준을 준용할 때 준용 대상을 특정하도록 규정 명확화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법 시행령」은 비파괴검사업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기술인력의 기준을 '엔지니어링업'과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11)됨에 따라, 둘 중 어떤 기준을 준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김



비파괴검사업과 엔지니어링산업 간 유사성과 법령 간 준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파괴검사업의 기술인력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현행 규정처럼 준용하려는 경우에도 엔지니어링업과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중 어떤 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준용하는지 보다 명확히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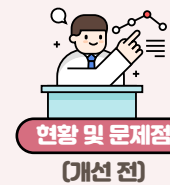
미인증수산물에 표시할 수 없는 “친환경” 문구 명확화



법령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 미인증수산물에 표기할 수 없는 문구로 “친환경”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를 개정하여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비 추진 완료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PART

2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체계 정비
- ⑤ 법령의 명확화





자전거도로의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명확화



법령명: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차선을 설치하는 경우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 차선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의미는 자전거도로의 중앙 또는 양 측면에 선을 긋는 경우 그 기술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 차선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을 의미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차도”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해서만 “차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자전거 도로에 표시하는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 선을 통칭하여 “차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2024년(예정)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필요 여부 명확화

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함)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임시허가에서 제외되는 위·수탁차주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한 경우로서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에 대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어 임시허가가 제한되는지 의문이 있음



개선내용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주택 이촉시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내용

기존 해석례(21-0365)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이촉하려는 경우로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한만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고 종전 대지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개선내용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중첩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농지법」 위반 농지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말소 대상 여부 명확화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를 임차하여 해당 농지에 관한 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등록말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



개선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4조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의 신규 등록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사유 명확화



법령명: 농지법 시행령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농지전용허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에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부동산의 소유권 · 사용권 상실 시 등록취소 등 근거 명확화



법령명: 체육시설법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에 시·도지사등이 직권으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문언상 불분명



현재 체육시설법령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요건”인지부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체육시설법령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명시한 다음, 체육시설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규정 명확화



법령명: 산지관리법 시행령



소관 부처: 산림청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 대상 명확화



법령명: 소금산업 진흥법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면적 전체가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이 위치한 면적만 감면 대상인지가 불분명



개선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면적은 별표 5에 규정된 대상시설이 위치한 면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소금제조업자 중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염전을 임차하여 천일염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도 소금제조업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내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염전을 임차하여 자기 명의로 천일염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임차인도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의 명확화



법령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주체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라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는 ‘상급자’에 해당하고, 제13조제2항에 ‘상급자’가 명시되지 않아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



개선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상급자를 포함하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상급자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 명확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관 부처: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 의미를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로 해석하고 있는 바, 법령 문언과 소관부처의 해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함



개선내용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평가 체계를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관 부처: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분명함



개선내용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 명확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관 부처: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 각 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다목)에 대해서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에서는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모두 재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바, 채석단지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예외 없이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개선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7호 다목을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개정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명확화



법령명: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필요한지가 불분명함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음·진동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내용



2024년(예정)

정비계획
(년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등 동의 산정방식 명확화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서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한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전통시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한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내용



2024년(예정)

정비계획
(년도)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의 의미 명확화



법령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유수면관리청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별표에 따른 조정산식의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점용료·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하여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함



「공유수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사용료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소요 발생 시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명확화



법령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 부처: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와 액비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액비를 살포할 때 지켜야 하는 액비의 살포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가축분뇨에 액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가축분뇨와 이를 자원화한 액비 등의 개념 또는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범위 명확화



법령명: (舊) 주택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이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같은 영 시행일 이후 추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해당 부칙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2일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에 추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판로지원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공립학교가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



정비 추진 완료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농지법 시행령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개선내용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창문 등’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창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고 이하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출입구에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제55조의 “창문 등”이 제44조의 “창문등”과 동일한 의미인지)가 문제



개선내용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창문 등’의 범위를 ‘창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과 같이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창문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2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舊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소방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개선내용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24

1차 행정처분 후 등록요건 미달상태 유지 시 2차 행정처분 가능 여부 명확화



법령명: 해외이주법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상 불명확



개선내용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이에 대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특별채용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확화



법령명: 교육공무원임용령



소관 부처: 교육부



공개 청원을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 명확화



법령명: 청원법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내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2 조항을 개정하여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의 채용방법과 절차를 명시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 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개선내용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 명확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보증금 면제 대상 명확화



법령명: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함)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면제 대상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2024년(예정)



매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 등에 대한 관리기관의 처분방법 등의 명확화



법령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은 그 매수의무를 반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음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 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 기간이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분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제2119563호, '23.01.19.)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갱신요구에 대한 의무 명확화



법령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 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5년까지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



2024년(예정)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관계 법령”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포함되나, 이 사안에서는 “관계 법령” 중 하나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건축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한준호 의원 발의, 제2120053호, '23.2월)



31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의무 대상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하는지 불명확



개선내용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등을 참조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3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권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선내용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권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거주의무자의 거주간주 사유 및 그 발생시점 등의 명확화



법령명: 주택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주택에 당첨될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원 전원이 근무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이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개선내용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해야 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 등을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기준 명확화



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후 해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저축 가입일부터 5년'은 어떤 저축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



개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여부를 산정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3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의 전매의 범위 명확화 및 형사처벌 타당성



법령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개의 건축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1을 증여하고, 그 이후 배우자와 자신의 분양권 전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전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개선내용

1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분양권 일부 증여 후, 분양권 전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36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는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명확하나, 같은 규정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도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가 불분명함



개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개정하여 ‘광장, 공원, 유원지’도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점도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의 명확화



법령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이용·미용기구 중 타올 및 도포류 재사용 기준 완화



법령명: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이 세대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개인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음



개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제2조제4호)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 단서는 "사람"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대별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정비 추진 완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복지부 고시인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에서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세척·소독 후 재사용 가능하나 타올, 도포류는 혈액이 묻은 경우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됨



개선내용

타올 및 도포류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에도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을 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군인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등 지원 근거 도입



법령명: 군인 재해보상법



소관 부처: 국방부



임신한 근로자의 태아 건강이 업무로 인해 손상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6두41071)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공무원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인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



대법원 2016두41071 판결의 취지 및 근로자·공무원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지원 근거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예정)



바다 양식장 위치 및 구역도 표지판 설치 의무화



법령명: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양식업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구역도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해안가에 양식장 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양식장 경계가 불명확해 양식업자와 관광객의 갈등이 자주 발생



양식장 표지시설 내 양식장 구역도를 표시하는 등 양식장의 범위 및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할 필요



정비 추진 예정



내항여객선이 운항 중인 도서지역에도 도선업 가능한 예외사유 신설



법령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는 해역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데,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부족하고, 선원부족, 선박고장 등 사유로 결항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여객선 기준 이하 도선영업(승객정원 13명 미만)의 경우 여객선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소규모 도선사업자의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구역에 상관없이 도선업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정비 추진 예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수의계약 범위 명확화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조문에서 “물품 등”을 “물품”으로 개정하여 명확화



2024년(예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비 추진 완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아목라)의 규정 중 유효기간이 도과한 규정에 대한 정비



법령명: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2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30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2월 21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일부개정 시 별표 1 제5호아목라) 본문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2022년 5월 3일 본문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추가된 개정규정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규정에 대한 효력 여부가 문제됨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2월 21일부터는 비록 규정 형태가 남아있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5호아목라) 본문의 의미와 유효성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개정규정 삭제할 필요



2024년(예정)



45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시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거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의 최대한도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건폐율의 최대한도인지 아니면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의 최대한도인지 불명확함



개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초과할 수 없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임을 명확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46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의무 제외범위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개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참고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 수정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명확화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개발계획안과 그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개발계획안의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개선내용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안이 수정되는 경우에 기존 동의서의 효력 여부 및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정비계획
(년도)

2024년(예정)



2023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PART

3



기획정비

- 3-1. 소상공인의 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 3-2.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 3-3.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개선
- 3-4. 미성년자 연령제한 결격사유 완화
- 3-5.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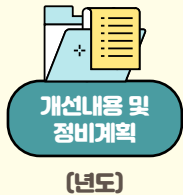




3-1. 소상공인의 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
* (국정과제 0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없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주요 사례]

▶ 과태료 등 감경 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기 존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최대 50 퍼센트까지만 감경 가능	개 선	소상공인인 인터넷게임시설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감경 범위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	--	--------	--

▶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기 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까지만 감경 가능	개 선	소상공인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감경 범위 확대
--------	--	--------	--

- 61개 대통령령(76개 과제), 14개 부령(17개 과제)을 정비(4.25. 공포·시행)하여, 전년도 정비한 35개 법령(45개 과제)까지 총 109개 법령(138개 과제)의 정비 완료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합리적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61개 대통령령 목록

연번	소관부처	법령	조문
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3
2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5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별표 1의4 별표 3
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4
7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 별표 6
8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5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10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5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4
1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6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연번	소관부처	법 령	조 문
17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별표 4
			별표 5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9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19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2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2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5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별표 6
2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2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6
			별표 9
29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3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3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3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35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3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3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연번	소관부처	법 령	조 문
38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9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
40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41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45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4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48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49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5
5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51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52		어촌·어항법 시행령	별표
5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54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5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별표 10
5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57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5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5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
6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61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	별표 2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14개 부령 목록

연번	소관부처	법령	조문
1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5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7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8			별표 15의3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9			별표 4
10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10			별표 19의2
11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3
1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1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3-2.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 및 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의 확대를 법령정비를 통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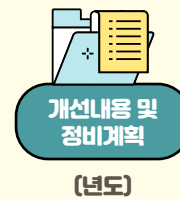
추진 배경

•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외에 같은 법에 따른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정비함

*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공포·시행(9. 26.)



개선내용 및
정비계획

(년도)

제명	개정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대상에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 포함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지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 포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지원) 지급대상에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 포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대상에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에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 포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신청자 선정 및 지원대상에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 포함



기대효과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개별 법령의 교육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성 제고 기대



3-3.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개선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정비 추진

*(국정과제 92-3)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 미성년자 등의 응시 등을 제한하는 자격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도움을 주고, 미성년자의 응시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결격사유 적용시점(자격취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자격을 개선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 등이 가능함을 명시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5. 18.), 이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박직원법」 2개 법률 개정안 공포·시행(24.1.2.)



개선내용 및
정비계획
(년도)

제 명	국가자격명 (22개 자격)	결격사유	개정내용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업무 개시 등록은 성년부터 가능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관계 자격증명	19세 미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면허증 발급은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성년부터 가능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등 7개 자격	18세 미만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삭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 관리사	미성년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수도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성년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미성년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리나선박 정비사	미성년자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자격취득시점)을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선박직원법	해기사 자격 7종	18세 미만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자격취득시점)을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하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사	미성년자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자격취득시점)을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기대효과

국가자격시험에 미성년자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는 국정성과 창출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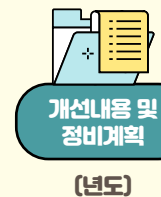
3-4. 미성년자 연령제한 결격사유 완화



청년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격취득 등 요건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국정과제 92-3)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 법령상 자격 취득과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 연령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1. 16.)



개선내용 및
정비계획
(년도)

제 명	개정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임원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한·아프리카 재단법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향로표지법	사설향로표지관리원 채용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기대효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의 증대 기대



3-5.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배경

청년 등의 구직활동 시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령상 학력 요건을 완화하여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국정과제 92-3)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개선내용 및 정비계획

(년도)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유연화

- 「기계설비법 시행령」 등 11개 부처 소관 20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공포·시행(11.21.)
* 해양교육전문기관 교육 전문인력, 사료안전관리인, 청소년 자립지원요원, 품질검사인력, 농업기계 검정인력 등 총 31개 자격·인력 관련

[학력 제한 완화 법령정비 주요 사례]

유형1 4년제 대학 졸업(학사 학위) → 2·3년제 대학 졸업(전문학사 학위)

▶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기 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

개 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

- 실무 경력이 있다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요건을 갖추어 업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상 학력 제한을 완화



유형2 2·3년제 대학 졸업(전문학사 학위) → 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 등) 졸업

▶ 사료 안전관리인 자격기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기 준

축산학, 수의학 등 관련 학과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개 선

• 관련 학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보장하되, 전문성 보안을 위해 관련 학과 수업 이수 여부에 따라 실무 경력에 차등을 두는 등 자격요건을 다양화·유연화

유형3 학력 제한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인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인력 자격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기 준

해당 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등으로 제한

개 선

해당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면 학력 제한 없이 가능

- 학력 제한 없이 관련 기관에서 실무경력만 갖추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기대효과

전문기술·업무능력을 갖춘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더 많은 경제활동 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채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개정 목록

연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분야)	소관부처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공디자인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법 시행령 제3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문화체육관광부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	전략산업융합교육센터 전담인력	산업통상자원부
5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	행정안전부
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	문화체육관광부
7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	국토교통부
8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	농림축산식품부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	환경부
1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	산림청
1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생물자원관 전문인력	환경부
15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	해양수산부
1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	산업통상자원부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	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	행정안전부
1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	환경부
1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교육전문기관 교육 전문인력	해양수산부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환경부



■ 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부령 개정 목록

연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분야)	소관부처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상근 인력	국토교통부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검정인력	농림축산식품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	자동차연료·첨가제 등 검사기관 검사원	환경부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연구인력	환경부
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 위탁수행인력	산업통상자원부
6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	농림축산식품부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림·환경·산지분야 전문가	산림청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 검사인력	산업통상자원부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양수산부
10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 인력	교육부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청소년쉼터 등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여성가족부

